



제2827호 (2026. 10. 9.)

2026 ISU 윤리 강령

ISU 정관에 따라 ISU 집행위는 ISU 윤리 강령의 개정판을 검토하고 채택했습니다.

본 통신문은 ISU 윤리 강령 2026를 포함하며 2707 통신문을 즉각적으로 대체합니다.

2026년 10월 9일

회장 김재열

사무총장 Colin Smith



국제빙상연맹

ISU 윤리강령 - 2026

제 1조. 목적

ISU 윤리강령의 목적은 ISU 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명확한 행동 및 청렴성 기준을 수립하고, ISU와 그 관할 스포츠 종목(ISU 스포츠)의 청렴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금지하며, 특히 빙상선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는 ISU 대회, 시범공연 및 기타 ISU 활동의 모든 참가자를 모든 형태의 괴롭힘과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

제 2조. 적용범위

2.1 인적 적용 범위

본 윤리강령은 어떠한 자격으로든 ISU에 관여하면서 ISU 대회 또는 활동의 현재 또는 장래 참가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하거나 얻으려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여기에는 특히 모든 ISU 직책 보유자(Office Holders), ISU 경기임원(Officials), ISU 회원연맹 및 그 산하 클럽의 직원·직책 보유자·자문인·선수·코치(ISU 대회 또는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 ISU 직원 및 자문인, ISU 대회 조직위원회와 그 경기임원 및 자원봉사자, 빙상선수, 코치, 의사, 팀 리더 및 기타 선수지원인력¹뿐 아니라 ISU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나 활동에 종사하는 그 밖의 모든 사람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명시하자면, ISU 활동에는 ISU가 승인한 국제대회(「경기 및 대회 규정」 제3.1조 참조)와 ISU 개발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활동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¹ 선수지원인력(Athlete Support Personnel):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거나 참가를 준비하는 선수와 함께 일하거나, 선수를 치료하거나 지원하는 코치, 트레이너, 매니저, 에이전트, 팀 스태프, 임원, 의료인력, 보조의료인력, 부모 또는 그 밖의 모든 사람. (2021 세계도핑방지규약의 정의)

2.2 사항별 적용 범위

- 본 윤리강령은 ISU의 이해관계가 관련되는 모든 경우에 폭넓게 적용된다. 적용 대상자가 ISU 대회 또는 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참석만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ISU 대회 또는 ISU 활동과 관련이 없는 행위나 발언이라도 ISU 또는 ISU 스포츠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
- ISU 대회 또는 활동 기간, 즉 해당 장소에 도착한 때부터 출발할 때까지의 기간 중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은 ISU 회원연맹의 국내 내부 사안에는 ISU 윤리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 오픈 국제대회의 제3자 주최자에게 ISU 윤리강령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대신 이러한 제3자 주최자는 (i) 승인의 조건으로 서명해야 하는 본 윤리강령 부속서의 윤리선언문, 그리고 (ii) 오픈 국제대회를 규율하는 ISU 공지(현재 ISU 통신문 제2171호) 및 그 개정 공지에 규정된 윤리적 요건에 구속된다.

- d) 국제대회 일정표에 등재된 대회를 주최하는 ISU 회원연맹은 본 윤리강령 부속서에 수록된 윤리선언문에 구속되며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 e) ISU 회원연맹과 제3자 주최자는 자체 내부 활동에 본 윤리강령을 채택하도록 권장된다.

제3조 일반 행동 기준

본 윤리강령의 적용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행동과 서면 및 구두 의사소통을 통해 정직, 존중, 공정성, 페어플레이, 윤리적 행동 및 스포츠 정신의 최고 기준을 모범적으로 보여야 하며, ISU 또는 ISU 스포츠의 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행동해서는 안 된다.
- ISU, ISU 스포츠 및 ISU 스포츠의 후원 아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의 공정성 · 정직성 · 청렴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고취해야 한다.

모든 형태의 발언에 적용되는 윤리적 제한은 소셜미디어 사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본 윤리강령의 적용 대상자는 다른 경기임원, 빙상선수, 코치, ISU 회원연맹 또는 그 대표자, 자원봉사자, ISU 직원을 포함한 관련 인력에 관한 구체적인 논평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해서는 안 되며, 경기임원의 배정, ISU가 내린 결정 또는 ISU 대회의 평가나 결과에 관한 논평도 게시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차별

본 윤리강령의 적용 대상자는 인종, 피부색, 성별(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별 표현 및 성 특성을 포함한다), 나이, 장애,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이나 그 밖의 지위 또는 운동 능력 등의 사유를 근거로 누구에게도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표현의 자유

5.1 본 윤리강령 제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ISU 윤리강령이 적용되는 ISU 대회 또는 활동의 어떠한 장소, 경기장 또는 구역에서도 어떠한 종류의 시위나 정치적 · 종교적 · 인종적 선전도 허용되지 않는다.



5.2 본 윤리강령이 적용되는 ISU 대회 및 활동 중, 빙상선수와 그 밖의 본 강령 적용 대상자는 다음을 포함한 기회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다.

- 언론과 접촉하도록 지정된 구역 및 센터에서 언론을 상대로 발언할 때
- 기자회견 및 인터뷰 중
- 팀 회의에서
- 전통적 매체 또는 디지털 매체에서
-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 경기 시작 전 및 경기 종료 후 경기 구역에서. 다만, 해당 표현(예: 몸짓)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i) 본 윤리강령을 포함한 ISU 정관 및 ISU 규정에 부합할 것.
 - ii) 개인, 국가, 단체, 그 존엄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겨냥하지 않을 것.
 - iii) 방해로 초래하지 않을 것(예: 다른 선수 또는 팀의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의 방해, 다른 선수 또는 팀의 소개나 의전 절차에 대한 물리적 방해[예: 깃발이나 현수막 등을 펼치는 행위], 사람 또는 재산에 물리적 피해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 등).

제6조 괴롭힘과 학대

6.1 본 윤리강령의 적용 대상자는 성적·신체적·심리적 여부,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 일회성 사건 또는 일련의 사건인지 여부, 대면 또는 온라인(소셜미디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으로 행해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괴롭힘과 학대를 삼가야 한다. 특히 권한 남용, 즉 다른 사람에 대해 영향력 · 권력 · 권한을 가진 지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학대는 방임 또는 부주의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괴롭힘이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적절하고 원치 않으며 모욕적인 행동의 한 형태이다. 이는 단발성일 수도 있고 일정 기간에 걸친 행동 양상일 수도 있으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다.

학대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서적·심리적·성적 학대, 아동 성학대 자료의 제작·소지·접근·열람·유포, 성적 협박(sextortion), 방임 및 부주의한 처우, 인신매매, 폭력과 착취, 따돌림 및 그루밍이 포함된다.

6.2 본 조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성희롱”이란 언어적·비언어적·신체적 여부와 관계없이 원치 않고 환영받지 못하는 성적 성격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성희롱은 성적 학대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면 또는 온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다.
- “성적 학대”란 비접촉·접촉·삽입 여부와 관계없이, 동의가 강요되거나 조작된 경우,



동의를 없거나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의존 관계를 바탕으로 동의를 얻은 경우에 이루어지는 성적 성격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성적 착취”란 성적인 이유로 취약한 지위, 권력의 차이 또는 신뢰를 실제로 악용하거나 악용하려고 시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 “신체적 학대”란 주먹질, 구타, 발차기, 물기, 화상 입히기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선수에게 신체적 해를 가하여 발생하는, 우발적이지 않은 외상이나 신체적 부상을 말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강제적이거나 부적절한 신체 활동(예: 부상 또는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나이나 체격에 적합하지 않은 훈련 부하를 부과하는 것 또는 가혹한 신고식), 강제적인 음주 또는 강제적이거나 조직적인 도핑 관행이 포함될 수 있다.
- “심리적 또는 정서적 학대”란 사람을 정신적·정서적으로 조종·강요·상처 입히거나, 약화시키거나, 두렵게 하기 위해 다양한 언어와 비신체적 행위를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또는 권력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 신체적 자해를 포함한 신체적 또는 심리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왜곡 · 혼란 · 영향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감금, 고립, 언어적 공격, 가혹한 신고식, 굴욕 주기, 위협, 어린아이 취급 또는 정체성 · 존엄성 · 자기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저하시킬 수 있는 그 밖의 처우 등 원치 않는 모든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학대는 대면 또는 온라인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다른 모든 형태의 학대의 핵심에 자리한다.
- “따돌림”(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사이버 따돌림)이란 대개 또래 사이에서 발생하며, 공격적 성격을 띠 수 있는 원치 않는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을 말한다. 실제로 존재하거나 존재한다고 인식되는 권력 불균형이 수반될 수 있다. 따돌림에는 위협, 소문이나 허위사실 유포, 신체적 또는 언어적 공격, 고의적인 배제 등의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 “가혹한 신고식”(Hazing)이란 조직적이고 대개 팀을 기반으로 하는 따돌림의 한 형태로, 기존 팀원이 새로운 팀원에게 굴욕적이고 위험한 입단 의식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 “방임 또는 부주의”란 코치 또는 선수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가진 다른 사람이 개인의 기본적인 신체적 · 정서적 · 사회적 · 심리적 필요를 충족할 최소한의 돌봄을 제공하지 않아 그 사람의 안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로써 피해를 초래하거나, 피해가 발생하도록 방치하거나, 즉각적인 피해 위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 “방임 또는 부주의”는 선수 안전과 관련된 부작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선수에게 음식 및/또는 음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 불충분한 휴식과 회복, 안전한 신체 훈련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것 또는 발달 연령이나 체격에 적합하지 않은 훈련 방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온라인 학대”는 사이버 따돌림을 포함하는 심리적 또는 정서적 학대의 한 유형이다. “온라인 학대”에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유해 행동이 포함된다. 이는 개인 또는 공통된 정체성을 공유하는 특정 하위집단을 겨냥한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혐오표현의 사용을 수반한다. 일반적으로 인종, 민족, 국적,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외모 등의 요인에 뿌리를 두거나 성적 성격을 띤다.

스포츠에서 가장 흔한 “온라인 학대”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플레밍(Flaming): 특정 대상을 향해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이거나 무례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이다.
- 괴롭힘(Harassment): 인터넷 맥락에서 괴롭힘은 개인 또는 집단에게 모욕적 · 위협적 ·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그러한 게시물을 올려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에는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또는 원치 않고 동의하지 않은 성적·친밀한 접근, 이미지 또는 영상이 포함될 수 있다.
- 비방(Denigration): 신뢰성이나 사회적 지위를 훼손할 의도로 누군가의 명예 또는 인격을 부당하게 또는 악의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이다.
- 사생활 공개(Outing): 누군가의 사적 또는 기밀 정보를 허가 없이 공개하는 행위로, 특히 개인의 정체성, 성적 지향 또는 활동과 관련된 사진, 영상, 스크린샷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사이버 스토킹(Cyberstalking): 전자적 의사소통 수단이나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여 개인을 반복적으로 괴롭히거나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이다. 흔히 공포나 고통을 유발할 의도로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고, 원치 않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악의적인 논평을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사이버 스토킹은 오프라인 괴롭힘이나 심지어 신체적 피해로 확대될 수 있다.

제7조 괴롭힘과 학대 사건의 신고 및 처리 절차

7.1 ISU 대회 또는 기타 ISU 활동 기간 중 발생한 괴롭힘이나 학대 의심 사건의 영향을 받았거나 이를 목격한 사람은 누구나 청렴성 신고 플랫폼(Integrity Reporting Platform, <https://skating.integrityline.com/>)을 통해 스케이팅 청렴성 기구(Skating Integrity Unit)에 해당 사건을 신고해야 한다. ISU 대회 담당 ISU 대표, ISU 사무국 직원 또는 선수위원회 위원 등 이러한 사건의 신고를 받은 사람은 신고자에게 청렴성 신고 플랫폼을 통한 신고를 권고하거나, 본인이 직접 해당 플랫폼을 통해 사건을 신고해야 한다. ISU 대회 또는 활동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세이프가딩(Safeguarding, 보호조치) 담당자 또는 ISU 최고위 대표에게도 즉시 신고해야 한다.

ISU 회원연맹이 ISU 대회 또는 활동에서 발생한 세이프가딩 사건을 알게 되거나 그러한 사건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대회 또는 활동의 지정 세이프가딩 담당자에게 알리는 것에 더해 청렴성 신고 플랫폼(<https://skating.integrityline.com/>)을 통해 스케이팅 청렴성 기구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핑 사건이나 도핑 의심 사항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REVEAL



(<https://www.reveal.sport>)에 접속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국제검사기구(ITA)가 ISU와 협력하여 운영하며, 도핑과 관련해 보거나 듣거나 경험한 모든 의심 사항을 완전히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7.2.

- a) 청렴성 신고 플랫폼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경로로 접수된 모든 괴롭힘 및 학대 신고는 스케이팅 청렴성 기구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b) 스케이팅 청렴성 기구는 신고에 담긴 사실과 증거 및 후속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 그리고 사안을 ISU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또는 현지 법률에 따라 적절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당국에 통보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 c) 신고자가 사안을 ISU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거나 현지 당국에 통보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스케이팅 청렴성 기구 이사회는 ISU의 명의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가 피해자로 주장되는 사람인 경우, 의무적 신고를 포함하여 적용 법률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케이팅 청렴성 기구는 그 사람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본 제7.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해 주장을 철회하거나 신고 내용을 전달하는 데 대한 동의를 거부 또는 철회한 경우, 스케이팅 청렴성 기구가 스포츠의 이익을 고려할 때 추가 피해의 합리적인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다른 수단을 통해 해당 주장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 문단에 따라 계속되는 어떠한 조사도 피해자로 주장되는 사람에게 추가 참여, 추가 증거 제공 또는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기밀정보의 회부·공개 또는 후속 이용에는 계속해서 제7.2항 c) 및 제7.4항이 적용된다.

7.3 스케이팅 청렴성 기구, 그 밖의 ISU 기구 및 어떠한 ISU 직무든 수행하는 모든 개인은, ISU 기구의 구성원 또는 ISU 직무 수행자로서 알게 된 괴롭힘이나 학대 의심 사건에 관한 모든 사항, 관련자의 개인정보,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그 밖의 정보 및 조사 결과(이하 “기밀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엄격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7.4 ISU 또는 스케이팅 청렴성 기구는 다음 경우에만 기밀정보를 적절한 사람 또는 당국에 공개할 수 있다.

- a) ISU 정관 제37조에 따라 개시된 ISU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 범위 안에서 공개하는 경우, 또는
- b)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괴롭힘과 학대가 계속되어 피해자, 특히 선수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 c) 해당 기밀정보가 잠재적인 범죄행위와 관련된 경우.

신고자가 피해자로 주장되는 사람인 경우, 본 제7.4항에 따른 공개에는 제7.2항 c)의



동의 요건이 적용된다.

스케이팅 청렴성 기구가 위 i)~iii)에 따라 기밀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안전하고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자 및/또는 신고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7.5 위 제7.3항 및 제7.4항에도 불구하고, 기밀정보를 포함한 ISU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ISU 징계절차」 제16조 제4항에 따라 공표해야 한다. 다만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공표할 때 ISU는 먼저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되며, 우선하는 사생활 보호 이익이 요구되는 특정 사안에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신고자 또는 그 밖의 증인의 익명성을 유지하고 그 개인정보를 비밀로 보호해야 한다.

7.6 ISU 회원연맹은 국제 수준의 빙상선수, 코치, 선수지원인력, 경기임원 또는 그 밖의 관련 개인에게 해당 연맹, 국가 세이프스포츠 기구, 국가올림픽위원회 또는 해당 국가의 형사·민사 법원이 부과한 모든 제재(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는 제외)를 ISU에 알릴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정보는 ISU 회원연맹이 제재를 부과했거나 제재 사실을 알게 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스케이팅 청렴성 기구 (skatingintegrityunit@isu.org)에 보내야 한다. ISU 회원연맹은 해당 제제가 변경되거나 해제된 경우에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ISU에 알릴 의무가 있다.

7.7 다른 기관의 제재에 대한 상호 인정

- a) 다른 기관(ISU 회원연맹, 국가도핑방지기구, 국가 세이프스포츠 기구, WADA 등)이 ISU 대회 또는 활동 참가자에게 적법하게 부과한 징계 결정은 ISU가 사안별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인정이 ISU 정관 및 규정 또는 ISU에 적용되는 그 밖의 법률·규칙·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ISU가 다른 기관의 징계 결정을 따르지 않을 참작 사정이나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b) 스케이팅 청렴성 기구는 해당 징계 결정을 검토하여 상호 인정의 예외가 적용되는지 판단하며, 스케이팅 청렴성 기구 이사회는 부과된 징계 결정을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 c) ISU가 다른 기관의 징계 결정을 상호 인정하는 경우, 해당 결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ISU 정관 제37조 및 「ISU 징계절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ISU 징계위원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사기 부패 횡령 부당이득

본 윤리강령의 적용 대상자는 개인의 사적 이익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ISU와 무관한 이익을 위해 ISU의 자금·재산·서비스와 관련하여 사기, 부패, 횡령 또는 부당 사용을 수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제9조 개인적 이익

본 윤리강령의 적용 대상자는 ISU 또는 ISU 회원연맹의 정관이나 규정에 따라 허용되거나 계약에 근거한 경우를 제외하고, ISU 대회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한 어떠한 형태의 보수나 수수료 또는 어떠한 성격의 은밀한 혜택이나 서비스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수락·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선물과 호의

10.1 본 윤리강령의 적용 대상자는 ISU 활동에 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거나 그러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선물·금전·기타 혜택, 또는 ISU나 ISU 스포츠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선물·금전·기타 혜택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통상적인 현지 관습에 비추어 소액의 존중 표시와 일반적인 환대의 범위를 넘어서는 선물 및 접대 등의 기타 호의를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0.2 제공하는 선물의 가치가 미화 500달러를 초과하거나 받는 선물의 가치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을 제공 및/또는 수락해서는 안 된다. 다만 상황상 선물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수령자는 해당 선물을 ISU 법무총괄(General Counsel)에게 전달하고, 기증자에게 ISU를 대신하여 선물을 받는 것임을 알려야 한다.

10.3 본 윤리강령의 적용 대상자는 가치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는 그 밖의 호의나 혜택을 받을 때, 주어진 상황에서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면 ISU 회장과 ISU 사무총장 양쪽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이를 받아서는 안 된다.

10.4 대회를 주최하는 ISU 회원연맹은 ISU 직책 보유자 및 ISU 경기임원을 게스트로 ISU 대회에 초대할 수 있으며, 제10.1항부터 제10.3항까지의 한도와 「ISU 경비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고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러한 초청을 수락할 수 있다.

- a) 초청객으로 참석하려는 계획은 최소 14일 전에 ISU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 b) 주최 ISU 회원연맹은 등록·출입 자격(AD), 현지 교통, 식사, 공식 호텔 숙박, 통상적인 환영 키트 및 공식 행사 초대만 제공할 수 있으며, 선물이나 혜택의 총가치는 미화 200달러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 밖의 모든 비용, 여행 비용은 초청받은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 ISU 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예외를 허용하거나, 초청받은 사람이 해당 대회에서 적어도 하루 종일 다른 직무(예: 세미나 진행)도 수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후자의 경우 주최 ISU 회원연맹이 이코노미 클래스 여행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ISU 경비 지침」에 규정되어 있다.



제11조 이해충돌

11.1 본 윤리강령의 적용 대상자는 모든 이해충돌을 피해야 하며, 이해충돌을 초래한다고 합리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어떠한 상황에도 스스로를 두어서는 안 된다.

11.2 본 윤리강령의 적용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a) 이해충돌이 관련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개인적 이해관계를 신속히 공개할 것.
- b) 본인이나 가족의 이익 또는 대중의 찬사를 수반하는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그러한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 c) 자신의 빙상 관련 역할과 관여에 관련되는 범위에서 제3자 또는 자신이 소속된 ISU 회원연맹에 부당한 호의를 제공하지 않을 것.

11.3 본 윤리강령의 적용 대상자는 공식 직책으로 ISU에 활동하는 동안, ISU에 대한 자신의 독립적 지위 · 의무 · 충성심과 언제나 충돌할 수 있거나 합리적으로 충돌한다고 보일 수 있는 소속 ISU 회원연맹의 공식 직책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11.4 개인적 상업적 가족 관계

- a) “이해충돌” 조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ISU 윤리강령은 본 윤리강령에 명시된 임명된 ISU 경기임원 및 기타 참가자에게 적용된다.
- b) 본 윤리강령의 광범위한 인적 적용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전제에서, 다음 예시를 지침으로 제시한다.
 - i. ISU 대회, 동계올림픽 또는 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선출되거나 임명된 직책 보유자는 국가대표팀 구성원으로 활동하거나, 팀 리더, 부팀 리더, 보호·동행 담당자(chaperone), 팀 의사 또는 팀 코치로 활동하거나,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은 예외로 한다. A) ISU 기술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코치는 ISU 대회 또는 국제대회에 참가한 자신의 제자를 개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B)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ISU 선수위원회 위원은 아래 i-bis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i-bis. 위 i. B)의 예외를 적용받는 ISU 선수위원회 위원은 ISU 대회, 동계올림픽 또는 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자신의 소속 ISU 회원연맹을 위해 팀 코치, 팀 리더, 부팀 리더, 보호·동행 담당자 또는 팀 의사로 활동하고, 해당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a) 수행하려는 역할을 사전에 서면으로 스케이팅 청렴성 기구 및 해당 종목 부문 부회장에게 공개할 것.
 - b) 선수위원회 위원으로서 해당 ISU 대회, 해당 국가대표팀 또는 자신이 지원하는 선수와 관련된 위원회·이사회·기타 ISU 사안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주거나, 자문하거나, 투표하지 않을 것. 또한 「선수위원회 운영규정」 제8.1항



및 제8.2항에 따라 해당 사안에서 회피할 것.

- c) 같은 경기에서 ISU 경기임원(레프리, 저지,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또는 테크니컬 패널 구성원을 포함한다)으로 동시에 활동하지 않을 것. 또한 「ISU 종목별 경기규칙」에 따른 모든 적용 가능한 제한을 계속 준수할 것.
- d) 제3자가 합리적으로 이해충돌로 볼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상황에 스스로를 두지 않을 것.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된 위원은 그 직책을 맡는 날부터 본 호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역할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해충돌의 존재 여부 또는 적절한 관리 여부에 관한 모든 분쟁은 「선수위원회 운영규정」 및 「스케이팅 청렴성 기구 규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스케이팅 청렴성 기구는 이해충돌을 적절히 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예외의 적용에 조건을 부과하거나 예외 적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 ii. 피겨스케이팅 부문에 한하여, ISU 경기임원(레프리, 저지,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등)은 ISU 대회, 동계올림픽 또는 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ISU 경기임원으로 활동하지 않는 경우 국가대표팀 구성원, 팀 리더, 부팀 리더, 보호·동행 담당자, 팀 의사 또는 팀 코치로 활동하고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ISU 경기임원이 같은 시즌에 ISU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또는 동계올림픽에서 레프리, 저지,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또는 OAC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그 시즌의 ISU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동계올림픽 또는 동계청소년올림픽에 팀 리더(또는 부팀 리더)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
- iii. ISU 대회, 동계올림픽 또는 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참가 선수의 가족은 해당 선수가 출전한 경기의 경기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다만 그러한 활동이 합리적으로 이해충돌로 보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ISU 대회, 동계올림픽 또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의 다른 경기에서는 활동할 수 있다.
- iv. ISU 대회, 동계올림픽 또는 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참가자격이 없는 사람 또는 코치의 가족은 해당 참가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코치의 제자가 출전한 경기의 경기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다만 그러한 활동이 합리적으로 이해충돌로 보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ISU 대회, 동계올림픽 또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의 다른 경기에서는 활동할 수 있다.
- v. “가족”이란 출생, 혼인 또는 동거 동반자 관계로 연결된 사람과, 그 관계가 합리적으로 이해충돌을 초래한다고 보일 수 있는 모든 친밀한 개인적 관계의 상대방, 친구 또는 관련자를 말한다.



- vi. 대회 인력 배치와 관련하여, 배정된 ISU 경기임원에 대한 ISU 윤리강령의 적용에 관한 이해충돌 또는 그 밖의 문제로서 대회에서 제기되는 모든 사항은 레프리(들)가 결정해야 한다.
- vii. 다음은 ISU 경기임원의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추가 예시이다.
- A. ISU 대회에 배정된 ISU 경기임원이 ISU 대회, 동계올림픽, 동계청소년올림픽 또는 피겨스케이팅·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챌린저 시리즈 대회가 종료되기 전에 어느 ISU 회원연맹이든 그 “팀” 만찬에 참석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
 - B. 코치이기도 한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는 자신의 이전 제자가 출전하는 ISU 대회, 동계올림픽, 동계청소년올림픽 또는 챌린저 시리즈 대회에서 테크니컬 패널로 활동하기 전에 한 시즌 전체를 기다려야 한다.
 - C. 코치이기도 한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가 같은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코치이기도 한 경우, 자신의 제자가 다른 종목에 출전하더라도 해당 ISU 대회, 동계올림픽, 동계청소년올림픽 또는 챌린저 시리즈 대회의 테크니컬 패널로 활동할 수 없다.
 - D. ISU 경기임원의 배우자, 동반자 및/또는 “가족” 구성원이 같은 경기의 다른 종목에서 선수를 지도하는 경우, 해당 경기임원이 ISU 대회, 동계올림픽, 동계청소년올림픽 또는 챌린저 시리즈 대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
 - E. ISU 경기임원의 배우자, 동반자 또는 “가족” 구성원이 같은 ISU 대회, 동계올림픽, 동계청소년올림픽 또는 챌린저 시리즈 대회에서 팀 리더나 부팀 리더로 활동하는 경우, 해당 경기임원은 그 대회의 어떠한 종목에서도 활동할 수 없다.
 - F. 코치이기도 한 ISU 경기임원이 같은 시즌에 한 ISU 선수권대회의 특정 종목에서 경기임원으로 활동한 다음, 다른 ISU 선수권대회의 같은 종목에서 선수를 지도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
 - G. 각 경기 시즌의 10월 1일부터 마지막 ISU 선수권대회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ISU 선수권대회, 동계올림픽 또는 동계청소년올림픽에 배정된 ISU 경기임원은 해당 대회의 첫 공식 연습 시작 전 60일 동안, 자신이 배정된 같은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및/또는 그 코치)에게 대면으로든 전자기기를 이용한 원격 방식으로든 모니터링이나 피드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 밖의 모든 ISU 대회 및 챌린저 시리즈 대회에서는 배정된 ISU 경기임원이 해당 대회의 첫 공식 연습 시작 전 30일 동안 선수(및/또는 그 코치)에게 어떠한 형태의 모니터링이나 피드백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경기의 두 세그먼트가 모두 종료되고 최종 결과가 공식 게시된 후에는 배정된 ISU 경기임원이 해당 경기에서의 선수 수행에 관하여 선수(및/또는 그 코치)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c) 테크니컬 패널 경기임원 및 레프리

테크니컬 패널 구성원과 레프리는 경기의 승패 및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히 ISU 그랑프리 시리즈 대회, ISU 그랑프리 파이널, ISU 선수권대회, 동계청소년올림픽, 동계올림픽 및 챌린저 시리즈 대회에서 이해충돌 상황에 있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잠재적인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 i. 테크니컬 패널 구성원 또는 레프리와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선수가 출전하는 ISU 시니어 ·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대회, ISU 주니어·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모든 ISU 선수권대회, 챌린저 시리즈 대회, 동계청소년올림픽 또는 동계올림픽의 어떠한 종목에서도 해당 개인은 테크니컬 패널 구성원 또는 레프리로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특별한 관계는 예를 들어 가족 관계(규칙 제121조 제3항 k) ii) 5. 참조), 대부모 관계, 선수 · 선수의 부모 · 기타 친족 · 코치와의 친밀한 우정 또는 개인적 적대감 등으로 형성될 수 있다. 코치로도 활동하는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의 경우에는 해당 선수의 코치와 강한 경쟁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시니어 그랑프리 대회에서 선수를 지도하는 코치는 같은 시즌의 다른 시니어 그랑프리 대회 또는 주니어 ·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테크니컬 패널 구성원으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 주니어 그랑프리 대회에서 선수를 지도하는 코치는 같은 시즌의 다른 주니어 그랑프리 대회 또는 주니어 ·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테크니컬 패널 구성원으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
- ii. 자신의 소속 ISU 회원연맹의 선수·페어·아이스댄스 커플이 직전 시즌의 ISU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5위에 입상했거나 해당 동계올림픽에서 1~5위에 입상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종목에서는, 어떠한 개인도 해당 동계올림픽의 테크니컬 패널 구성원 또는 레프리로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
- iii. ISU 시니어 선수권대회의 테크니컬 패널 구성원과 레프리를 임명할 때는 가능한 한 해당 종목의 선수가 1~5위에 입상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ISU 회원연맹 소속 경기임원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해당 종목의 테크니컬 패널 구성원 전원과 레프리를 해당 ISU 선수권대회의 그 종목에서 선수가 1~5위에 입상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ISU 회원연맹 소속으로 구성해야 한다.
- iv. 동계올림픽 및 모든 ISU 선수권대회에서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또는 레프리로서 활동하도록 임명된 사람은, 같은 시즌의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ISU 회원연맹(자신의 소속 회원연맹은 제외)의 국내선수권대회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국내대회에서도 어떠한 종목이든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또는 레프리로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
- v. ISU 회원연맹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Director General), 사무국장(General Secretary), 최고경영자(CEO), 집행책임자(Executive Director), 경기총괄책임자(Sport Director)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책의 사람은, 해당 회원연맹의 위 직책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된 재임기간 전체에 걸쳐 모든 ISU 대회, 동계청소년올림픽 및 동계올림픽에서 테크니컬 패널 구성원 또는 레프리로서



활동해서는 안 되며, 2027/28시즌부터는 모든 국제대회에서도 활동해서는 안 된다.

d) 저지

- i. 같은 시즌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경기에 참가하는 다른 ISU 회원연맹 (자신의 소속 회원연맹은 제외)의 국내선수권대회 또는 그 밖의 국내대회에서 어떠한 종목이든 레프리,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또는 저지로 활동한 사람은 동계올림픽 및 모든 ISU 선수권대회에서 저지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
- ii. ISU 회원연맹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Director General), 사무국장(General Secretary), 최고경영자(CEO), 집행책임자(Executive Director), 경기총괄책임자(Sport Director)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책의 사람은 선출되거나 임명된 재임기간 전체에 걸쳐 모든 ISU 대회, 동계청소년올림픽 및 동계올림픽에서 저지로 활동해서는 안 되며, 2027/28시즌부터는 모든 국제대회에서도 활동해서는 안 된다.

e) 이해충돌 평가 및 신고에 관한 ISU 경기임원의 책임

- i. 위 이해충돌 예시가 모든 경우를 망라하는 것은 아니다. 테크니컬 패널 구성원, 레프리 또는 저지로 배정된 각 경기임원은 자신이 이해충돌 상황에 있다고 인식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책임이 있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잠재적인 이해충돌이 존재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피겨스케이팅 담당 부회장에게 해당 상황을 신속히 제기해야 한다. 실제 이해충돌뿐 아니라 제3자에게 합리적으로 이해충돌로 보일 수 있는 상황도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ii. 경기임원은 위 b)~d)에 명시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잠재적 이해충돌 상황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ISU 피겨스케이팅 담당 부회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위 b)~d)에 따른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해당 경기임원은 ISU 활동 가능 여부 제출 양식(ISU availability form)에 그 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이해충돌 또는 그 발생 가능성이 나중에 또는 ISU 시즌 진행 중에 발생한 경우, 해당 경기임원 및/또는 그 소속 ISU 회원연맹은 즉시 ISU 피겨스케이팅 담당 부회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 영향력 행사와 조작

12.1 본 윤리강령의 적용 대상자는 스포츠 윤리, 스포츠 정신 또는 페어플레이 원칙에 반하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ISU 관할 빙상대회의 진행 및/또는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이를 조작하는 어떠한 행위나 시도도 해서는 안 된다.

12.2 본 윤리강령의 적용 대상자는 절대적인 독립성을 유지하고 「경기 조작 방지를 위한 올림픽 무브먼트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은 특히 모든 종류의 부패에 대한 관여, 모든 내부정보의 부당 사용, ISU 회원연맹의 코치, 선수 또는 그



가족, ISU 직책 보유자 또는 ISU 회원연맹에 대한 편애 또는 편견을 금지한다.

12.3 ISU 경기임원은 중립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국가적 편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편향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처신해야 한다.

12.4 ISU 경기임원은 「ISU 경기 및 대회 규정」 제14.9.2조에 따른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여, ISU 대회 현장에서 경기임원과 관련된 부적절하거나 비정상적인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하는 경우 즉시 레프리 또는 ISU 대표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3조 베팅

13.1 본 윤리강령의 적용 대상자는 스포츠 베팅 사업자가 주최하는 빙상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삼가야 하며, ISU 관할의 모든 빙상대회·활동, 동계올림픽, 동계청소년올림픽 및 ISU가 자신의 스포츠 종목을 대표하는 그 밖의 모든 대회·활동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스포츠 베팅 활동을 삼가야 한다. 특히 해당 대회에 자신이 참가하는지 또는 자신의 빙상 종목인지와 관계없이 어떠한 빙상대회에도 베팅해서는 안 된다.

13.2 본 윤리강령의 적용 대상자는 해당 스포츠 종목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어떠한 불법 베팅 활동에도 참가해서는 안 된다.

13.3 본 조에서 “베팅”이란 돈을 얻기 위해 스포츠 대회의 결과 또는 대회 중의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판돈을 거는 스포츠 베팅 활동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윤리강령은 다른 도박(포커 및 카지노 서비스), 또는 복권 서비스, 빙고 서비스, 즉석복권이나 판촉용 게임으로 구성된 판매촉진 서비스 등 우연에 의존하는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4조 부패 조작 또는 베팅의 신고

본 윤리강령의 적용 대상자는 모든 종류의 베팅, 조작, 부패 및/또는 내부정보의 부당 사용 또는 공개되지 않은 이해충돌에 관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관련 접근·제안을 받은 사실의 전체 세부 내용을, 가능한 최초의 기회에 청렴성 신고 플랫폼을 통해 신고하거나 IOC 청렴성 및 준법 핫라인(www.olympic.org/integrityhotline)을 통해 IOC에 신고해야 한다.

제15조 스케이팅 청렴성 기구 및 도핑방지기구의 조사에 대한 협조

15.1 본 윤리강령의 적용 대상자는 스케이팅 청렴성 기구가 실시하는 모든 조사(내부



조사 또는 위임받은 제3자가 실시하는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15.2 본 윤리강령의 적용 대상자는 도핑방지규정 위반 의혹에 대한 도핑방지기구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도핑방지규정 위반 의혹에 대한 도핑방지기구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것은 본 윤리강령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15.3 선수가 도핑검사 임원 또는 도핑검사에 관여하는 그 밖의 사람을 상대로 하거나, 기타 도핑방지 활동과 관련하여 모욕적 행위(본 윤리강령 제6조에서 정의한 모든 종류의 학대적·위협적·무례한 행동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를 하는 경우, ISU 윤리강령에 따른 징계상 또는 윤리상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다.

제16조 도핑

16.1 본 윤리강령의 적용 대상자는 「ISU 도핑방지규정」의 조항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16.2 코치 및 그 밖의 모든 선수지원인력은 선수와의 모든 상호작용에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의 금지목록에 등재된 보충제 또는 물질을 권유하거나 강요하거나 몰래 투여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선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요구에 따른 것이든 그 밖의 사유에 따른 것이든, 도핑방지규정을 준수하고 선수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나아가 스포츠의 청렴성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한 물질의 사용을 조장하거나 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삼가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물질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하거나 소지해서는 안 되며, 선수에게 도핑을 하지 않도록 권장할 자신의 책임과 상충하는 어떠한 개인적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불법 약물

본 윤리강령의 적용 대상자가 ISU 대회 또는 ISU가 승인한 활동이나 대회에 참가하거나 참석하는 경우, 불법 약물을 유통·사용·소지해서는 안 되며, 불법 약물 사용 또는 약물 관련 규정 위반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이를 도와서는 안 된다.

제18조 ISU 또는 당국에 대한 신고를 단념시키거나 보복하는 행위

도핑방지규정 위반 의혹, ISU 윤리강령 위반 또는 WADA 규약 미준수와 관련된



증거나 정보를 선의로 ISU, 스케이팅 청렴성 기구, ITA, WADA, 기타 도핑방지기구, 법집행기관, 규제기관 또는 징계기구, 심리기구 또는 ISU·ITA·WADA를 대신하여 조사하는 사람에게 제공한 사람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보복하는 것은 본 윤리강령 위반이다.

제19조 ISU 트랜스젠더 정책 위반

ISU 트랜스젠더 정책의 적용 대상자는 해당 정책에 명시된 모든 참가자격 기준과 조건, 모니터링 요건 및 자료 제출 요건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ISU 트랜스젠더 정책의 참가자격 기준과 조건 및/또는 모니터링 요건 및/또는 자료 제출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본 윤리강령 위반에 해당한다.

제20조 제재

본 윤리강령의 모든 위반은 ISU 정관 제37조 및 「ISU 징계절차」 제2조에 따른 징계절차 및 제재의 대상이 된다.

제21조 규정 간 충돌

ISU 윤리강령의 조항과 ISU 정관, 규정, 규칙, 절차 및 선거규정의 조항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정관, 규정, 규칙, 절차 및 선거규정의 조항이 우선한다.

제22조 IOC 윤리강령 및 기타 IOC 윤리 문서

22.1 본 윤리강령의 적용 대상자에 대한 IOC 윤리강령 및 아래 제2항에 열거된 기타 IOC 윤리 문서의 적용은 명시적으로 유보된다.

23.2 해당 IOC의 기타 윤리 문서는 다음과 같다.

- 올림픽 관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충돌에 관한 규칙
- 동계올림픽 유치 신청 절차를 규율하는 규칙
- 청소년올림픽 유치 신청 절차에 관한 행동규칙
- 올림픽 종목 포함을 추진하는 IOC 인정 국제연맹에 관한 행동규칙
- 올림픽 및 스포츠 무브먼트의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 보편 원칙
- 경기 조작 방지를 위한 올림픽 무브먼트 규정
- IOC 윤리위원회 규정
- 윤리 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규율하는 절차규칙



윤리선언문

[명칭 및 세부 정보](이하 “주최자”)는 ISU가 승인한 국제대회 of 청렴성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윤리 원칙을 준수할 것을 ISU에 선언한다.

- (i) 주최자는 페어플레이, 정직, 존중, 진실성, 공정성, 윤리적 행동 및 스포츠 정신의 최고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주최자는 스포츠 윤리에 반하는 방식으로 어떠한 빙상대회의 진행 및/또는 결과에도 영향을 주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 (ii) 주최자는 어린 선수 또는 취약한 선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선수를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범 관행을 적용한다(특히 주최자의 지휘하에 활동하는 직원, 서비스 제공자 및 경기임원과 관련하여).
- (iii) 주최자는 모든 선수, 경기임원, 자원봉사자 및 직원, 특히 어리거나 취약한 사람들을 존중하며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우하는 데 동의한다.
- (iv) 주최자는 어린 선수를 착취하지 않으며, 모든 미성년 선수(아동)(18세 미만)가 적격한 사람에 의해 대리되도록 보장한다.
- (v) 주최자는 이해충돌과 관련된다고 합리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모든 이해관계를 공개하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모든 활동을 삼갈 것을 약속한다.
- (vi) 주최자는 빙상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빙상의 청렴성을 위태롭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 (vii) 주최자는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로 확정판결에 따른 유죄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 조직범죄단체에 대한 참여, 부패, 사기, 테러 활동 관련 범죄, 불법 약물 관련 범죄 및 자금세탁.
- (viii) 주최자는 자신의 대회 장소, 웹사이트 또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담배 제품 또는 독주(알코올 도수 ABV 20% 초과)를 광고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 (ix) 주최자는 자신이 스포츠 베팅 사업자*가 아니며, 자신의 대회 장소, 웹사이트 또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어떠한 스포츠 베팅 활동도 삼갈 것임을 확인한다.
- (x) 주최자는 목격했거나 의심되는 학대 또는 괴롭힘, 또는 모든 종류의 베팅, 조작, 부패 및/또는 내부정보의 부당 사용에 관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관련 접근·제안을 받은 사실의 전체 세부 내용을, 가능한 최초의 기회에 스케이팅 청렴성 기구 또는 IOC 청렴성 및 준법 핫라인(www.olympic.org/integrityhotline)을 통해 IOC에 공개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주최자는 「경기 및 대회 규정」 제14.9.2조에 따라 어느 대회에서든 경기임원과 관련된 부적절하거나 비정상적인 행위 또는 제안을 신고해야 한다.

주최자는 위 원칙을 위반하면 국제대회 개최 승인이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그러한 철회로 발생한 모든 손실은 주최자가 단독으로 부담한다는 점을 이에 ISU에 확인한다.

[주최자]

[날짜]



* 본 선언문에서 “베팅”이란 돈을 얻기 위해 스포츠 대회 결과에 판돈을 거는 스포츠 베팅 활동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선언문은 다른 도박 활동(포커 및 카지노 서비스)이나 우연에 의존하는 게임(복권 서비스, 빙고 서비스, 즉석복권 또는 판촉용 게임으로 구성된 판매촉진 서비스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